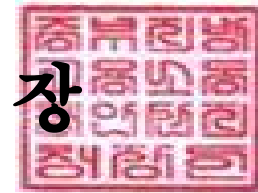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5. 1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최O규	96.06.24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 출 안내	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관련한 의무(방문상담 등)을 이행하지 않음 - 1차 출석통지: 2021. 4. 2. - 2차 출석통지: 2021. 4. 9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5.17. ~ 2021.5.3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경재영(Tel. 031-496-19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